

군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603호 2021. 4. 27.(화)

공 고

제2021-73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1
제2021-767호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 지정 공고 4
제2021-866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8
제2021-86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제2021-86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

회람									

발행 :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 033-432-7801, FAX: 033-430-2019)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1-73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513-6 외 1
3. 도로길이 : 171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81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두촌면 괘석리	513-6	전	1,990	213	고제순	
	513-10		679	600	고제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7.19>

도 로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지번 : 513-6, 513-10번지
건축주 : 고 순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171m	도로너비 4m	도로면적 813㎡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513-6	213	2012.09.10.	고 순		
513-10	35	2012.09.10.	고 순		
513-10	565	2012.09.10.	고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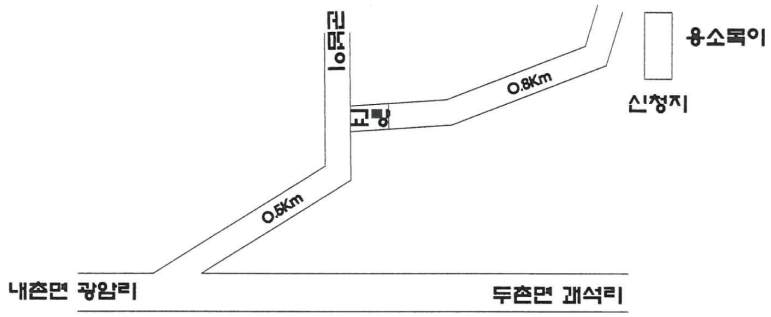
작성자 : 동림측량토목설계사무소 대표 징 구 (서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 / 1,200

홍천군 공고 제2021-76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43-3 외 1
3. 도로길이 : 72.0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29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길곡리	43-3	전	285	285	정○욱 심○화	
	43-4	대	4	4	김○식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대 장

지정번호 (2면 중 제1면)

대지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지번 42번지외 3필지
건축주 정 욱	생년월일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72.0m	도로너비 4.0m	도로면적 292.0㎡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아래 부분을 「홍천군 건축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43-3	285	2014. 06. .	정 [illegible] 욱		정
	285	2014. 06. .	심 [illegible] 화		
43-4	7	2014. 06. .	김 [illegible]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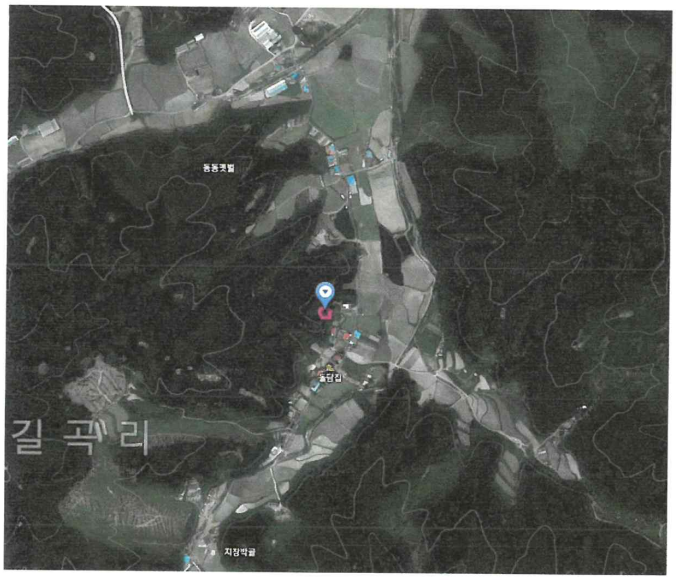
작성자 :(주) 화양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이 창 근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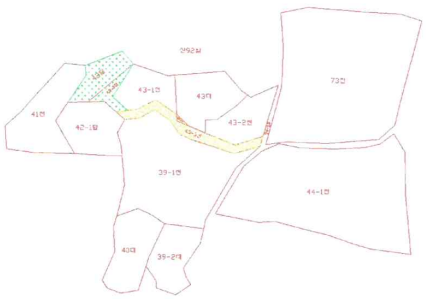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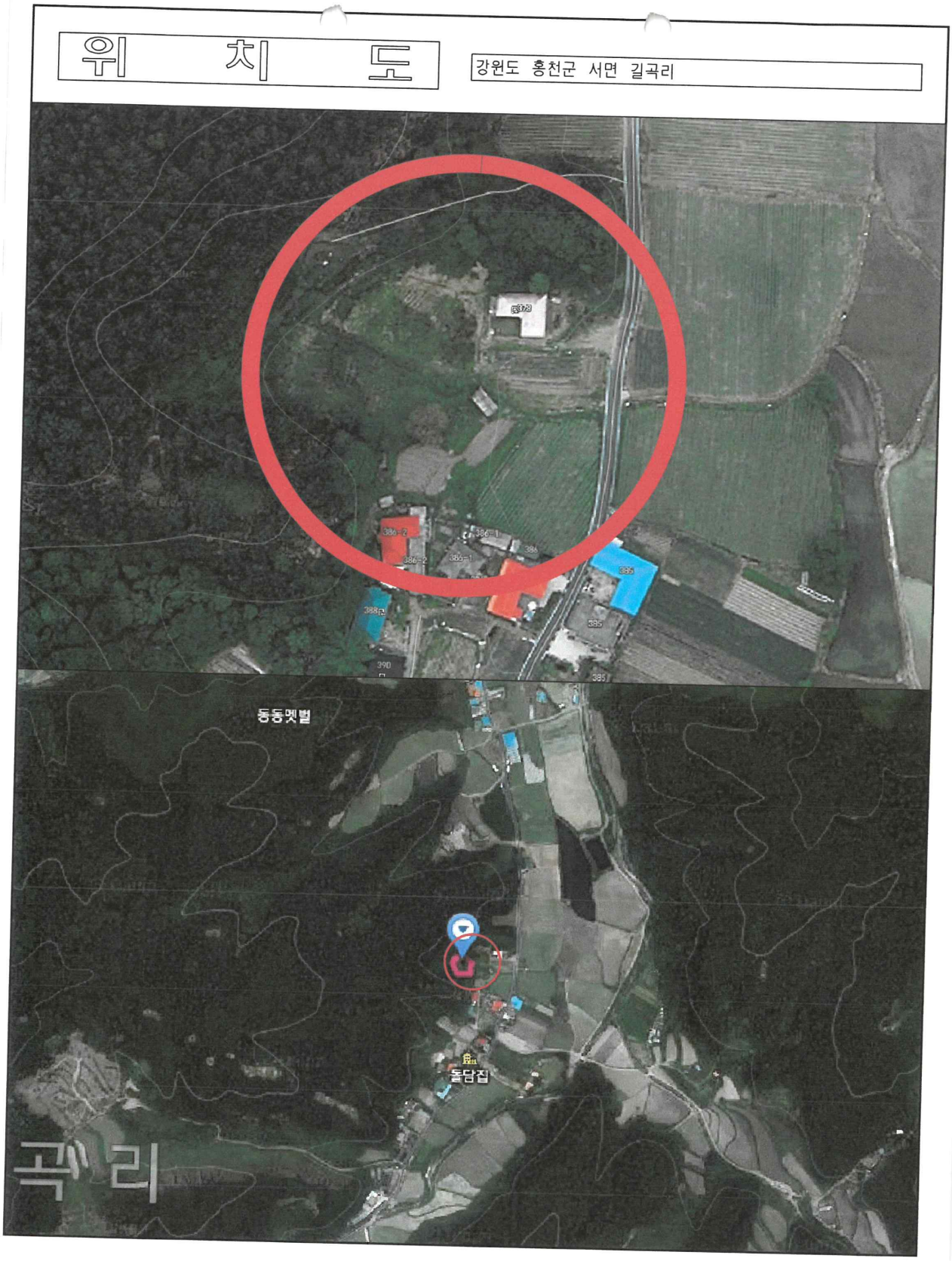


구 적 표

단위(㎡)

동리명	지	번	지목	사	적	신청면적	구 분
길 곡	42		답	280		280	②수목부지
	43-5		전	107		107	
계				387		387	
길 곡	43-3		전	285		285	④진출입로
	43-4		대	7		7	
계				292		292	

현황도	축 척 <임 의>


위 치 도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동동멧벌
돌담집
곡 리

홍천군 공고 제2021-866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48-2
3. 도로길이 : 91m
4. 도로너비 : 5.0~6.0m
5. 도로면적 : 49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시동리	산48-2	임	4,425	493	조규태	

도 로 대 장

지정번호 □□□□-□□□□

대 지 위 치	홍천군 남면 시동리			지 번	산48-2
건 축 주	조규태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 로 길 이	91m	도 로 너 비	5~ 6 m	도 로 면 적	493㎡

이해관계인 동의서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폐지 ·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 련 지 번	동의면적(㎡)	동 의 일 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산48-2	493㎡	2021. 04. .	조규태		조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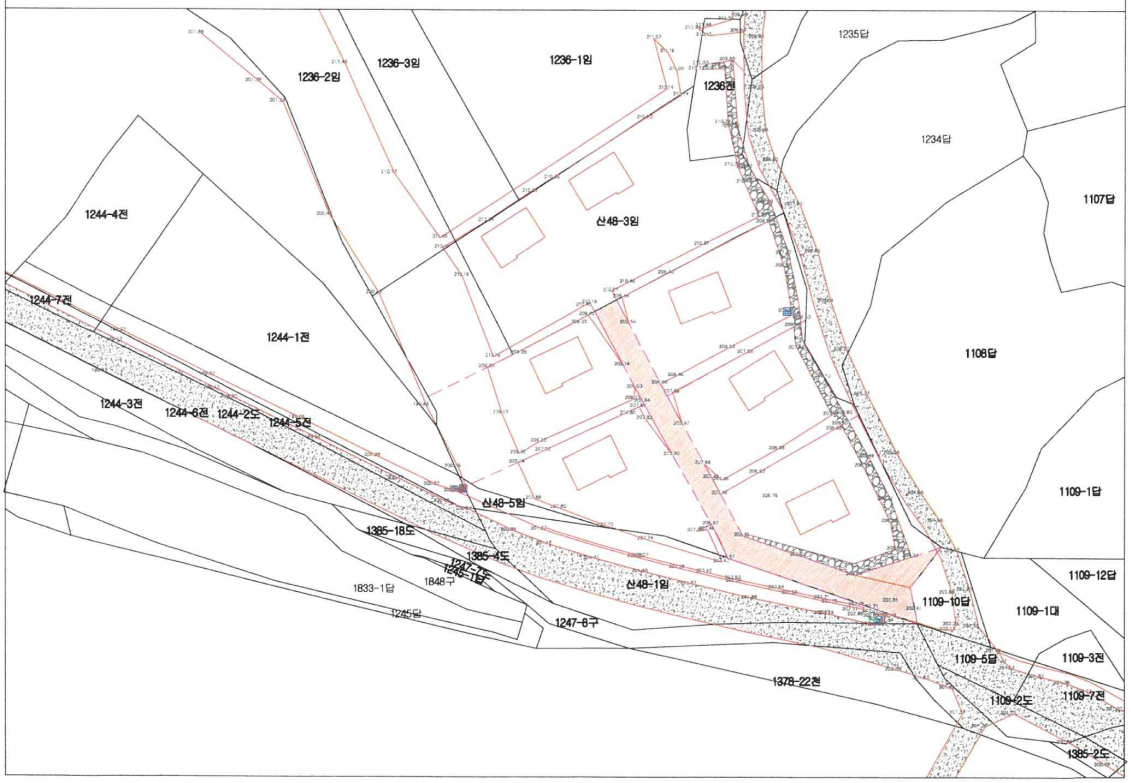
작 성 자 : 대경측량설계공사 이 영 우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위 치 도



현 황 도 S=1:1200



홍천군 공고 제2021-86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4. 26. ~ 4. 28. (3일)
3. 개정이유
   -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행정수요에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계 : 812명 ⇨ 841명 <증 29명>

나. 일반직 계 : 769명 ⇨ 795명 <증 26명>

- 행정과: 행정6급 감 1명, 행정·세무6급 증 1명, 행정·세무7급 감 1명, 행정 7급 증 1명, 행정9급 증 1명, 전산9급 증 1명, 사무운영9급 증 1명
- 교육과: 행정·사서7급 증 1명, 행정·사서9급 증 3명
- 일자리경제과: 행정9급 증 2명
- 농정과: 농업9급 증 1명
- 축산과: 농업9급 증 1명
- 산림과: 녹지9급 증 2명
- 환경과: 운전8급 증 1명, 공업·환경9급 증 1명
- 토지주택과: 시설9급 증 1명
- 보건소: 기술4급 증 1명, 의무5급 감 1명,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5급 증 1명,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5급 증 1명, 보건·간호·의료기술 6급 감 1명, 간호8급 증 6명, 의료기술9급 증 2명
- 상하수도사업소: 기계운영8급 감 1명, 공업·환경·시설9급 증 1명
- 홍천읍: 운전8급 감 1명, 운전 9급 감 1명, 사무운영 9급 감 1명, 행정 9급 증 2명

- 두촌면: 운전9급 감 1명, 행정9급 증 1명
- 내촌면: 운전9급 감 1명, 행정9급 증 1명
- 동 면: 운전8급 감 1명, 행정9급 증 1명
- 서 면: 운전9급 감 1명, 행정9급 증 1명
- 내 면: 운전9급 감 1명, 행정9급 증 1명

다. 지도직 계: 37명 ⇨ 40명 <증 3명>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증 3명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개정사항 요약)

직종.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현행	812	451	12	130	35	34	150
			변경	841	467	12	140	35	33	154
일반직 일반직	4급	소계	현행	3	3		0			
			변경	4	3		1			
		기술서기관 (0→1)	현행	0			0			
			변경	1			1			
	4-5급	소계	현행	1			1			
			변경	0			0			
		기술서기관 보건·간호·의무 (0→1)	현행	1			1			
			변경	0			0			
	5급	소계{	현행	31	17	2	1	1	1	9
			변경	32	17	2	2	1	1	9
		의무 (1→0)	현행	1			1			
			변경	0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0→1)	현행	0			0			
			변경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보건진료 (0→1)	현행	0			0			
			변경	1			1			
	6급	소계	현행	173	103	2	14	8	6	40
			변경	172	103	2	13	8	6	40
		행정 (27(3)→26(3))	현행	27(3)	22	2				3(3)
			변경	26(3)	21	2				3(3)
		행정·세무 (4→5)	현행	4	4					
			변경	5	5					
		보건·의료기술·간호 (4→3)	현행	4			4			

직종.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변경	3			3			
	7급	소계	현행	203	131	3	29	10	9	21
			변경	203	132	3	28	10	9	21
		행정 (50→51)	현행	50	43	3		1	1	2
			변경	51	44	3		1	1	2
		보건 (10→9)	현행	10	1		9			
			변경	9	1		8			
		행정·세무 (7→6)	현행	7	6				1	
			변경	6	5				1	
		행정·사서 (1→2)	현행	1	1					
			변경	2	2					
	8급	소계	현행	230	133	3	37	7	10	40
			변경	234	134	3	43	6	9	39
		간호 (16→22)	현행	16			16			
			변경	22			22			
		운전 (14)	현행	14	4	1	1		2	6
			변경	13	5	1	1		1	5
		기계운영 (4→3)	현행	4	1			1		2
			변경	3	1			0		2
	9급	소계	현행	126	57	2	10	9	8	40
			변경	148	71	2	12	10	8	45
		행정 (22→36)	현행	22	13					9
			변경	36	16				2	18
		전산 (0→1)	현행	0	0					
			변경	1	1					
		농업 (3→5)	현행	3	3					
			변경	5	5					
		녹지 (3→5)	현행	3	3					
			변경	5	5					
		시설 (8→9)	현행	8	6					2
			변경	9	7					2
		의료기술 (2→4)	현행	2			2			
			변경	4			4			
		행정·사서	현행	2	2					

직종.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2→5)	변경	5	5					
		공업·환경 (0→1)	현행	0	0					
			변경	1	1					
		공업·환경·시설 (0→1)	현행	0				0		
			변경	1				1		
		운전 (15→10)	현행	15	1	1	2	1	2	8
			변경	10	1	1	2	1	1	4
지도직		지도사 (34→37)	현행	34			34			
			변경	37			37			

※ 총괄 정원표 : 별표(안 제2조 관련),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규칙 제 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 2008.7.3]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시행일 2013.12.12]]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정원 증원(29명)과 보건소장 직급상향 조정(4·5급⇒4급) 및 조직개편에 따른 2개과 신설에 의한 보건소 정원의 직급조정(6급⇒5급)으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됨.
   나.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24조(정원의 관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정원 증원 29명을 반영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이 4·5급에서 4급으로,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신설로 6급 1명이 5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2021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추계함.
      2) 보수인상율 연1.5%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을 산정함.
   나. 추계결과 : 1,057,795천원 / 1년
      - 세부내역 : 별첨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행정과장 한 인 용
연락처	033-430-2210

비용소요 추계서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원)
총 계	1,057,795	
○ 인 건 비	998,395	
- 기본급	750,189	·4급(1) : 91,980,000원×1인 = 91,980,000원(증) ·4·5급(-1) : 81,467,000원×1인 = 81,467,000원(감) ·5급(1) : 81,467,000원×1인 = 81,467,000원(증) ·6급(-1) : 4,228,300원×1인×12월 = 50,739,600원(감1) ·8급(6) : 2,021,800원×6인×12월 = 145,569,600원(증) ·9급(20) : 1,755,800원×20인×12월 = 421,392,000원(증) ·지도사(3) : 3,944,100원×3인×12월 = 141,987,600원(증)
- 수 당	120,785	**초과근무수당 : 86,267,940천원** ·6급(-1) : 12,124원×1인×28시간×12월 = 4,073,660원(감1) ·8급(6) : 9,832원×6인 ×28시간×12월 = 19,821,300원(증) 9급(20) : 8,887원×20인×28시간×12월 = 59,720,600원(증) ·지도사(3) : 10,714원×3인×28시간×12월 = 10,799,700원(증) **정근수당 : 18,317,900천원** ·6급(-1) : 50,739,600원×1인(1/12)×50%×2회 = 4,228,300원(감1) ·8급(6) : 24,261,600원×6인×(1/12)×30%×2회 = 7,278,480원(증) ·9급(20) : 21,069,600원×20인(1/12)×15%×2회 = 10,534,800원(증) ·지도사(3) : 47,329,200원×3인(1/12)×20%×2회 = 4,732,920원(증) **정근수당가산금 : 16,200,000천원** ·6급(-1) : 130,000원×1인×12월 = 1,560,000원(감1) ·8급(6) : 50,000원×6인×12월 = 3,600,000원(증) ·9급(20) : 50,000원×20인×12월 = 12,000,000원(증) ·지도직(3) : 60,000원×3인×12월 = 2,160,000원(증)
- 정액급식비	43,680	·6급(-1) : 130,000원×1인×12월 = 1,560,000원(감1) ·8급(6) : 130,000원×6인×12월 = 9,360,000원(증) ·9급(20) : 130,000원×20인×12월 = 31,200,000원(증) ·지도직(3) : 130,000원×3인×12월 = 4,680,000원(증)
- 명절휴가비	65,820	·6급(-1) : 4,228,300원×1인×60%×2회 = 5,073,960원(감1) ·8급(6) : 2,021,800원×6인×60%×2회 = 14,556,960원(증) ·9급(20) : 1,755,800원×20인×60%×2회 = 42,139,200원(증) ·지도직(3) : 3,944,100원×3인×60%×2회 = 14,198,760원(증)
- 연가보상비	17,921	·4급(1) : 91,980,000원*1/12*86%*1/30*10일 = 2,197,300원(증) ·4·5급(-1) : 81,467,000원*1/12*86%*1/30*10일 = 1,976,150원(감1) ·5급(1) : 81,467,000원*1/12*86%*1/30*10일 = 1,976,156원(증) ·6급(-1) : 4,228,300원×1인×86%×(1/30)×10일 = 1,212,110원(감1) ·8급(6) : 2,021,800원×6인×86%×(1/30)×10일 = 3,477,490원(증) ·9급(20) : 1,755,800원×20인×86%×(1/30)×10일 = 10,066,580원(증) ·지도직(3) : 3,944,100원×3인×86%×(1/30)×10일 = 3,391,920원(증)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원)
○ 물건비	59,400	
- 직급보조비	54,000	· 4급(1) : 400,000원×1인×12월 = 4,800,000원(증) · 4·5급(-1) : 250,000원×1인×12월 = 3,000,000원(감1) · 5급(1) : 250,000원×1인×12월 = 3,000,000원(증) · 6급(1) : 165,000원×1인×12월 = 1,980,000원(감) · 8급(6) : 145,000원×6인×12월 = 10,440,000원(증) · 9급(20) : 145,000원×20인×12월 = 34,800,000원(증) · 지도사(3) : 165,000원×3인×12월 = 5,940,000원(증)
- 직책급수당	5,400	· 4급 : 400,000원×1인×12월 = 4,800,000원(증1) · 4·5급(기관장) : 150,000원×1인×12월 = 1,800,000원(감1) · 5급(보조기관) : 100,000원×2인×12월 = 2,400,000원(증)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 입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일반회계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세 출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일반회계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재원 조달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의존 재원	소 계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보조금						
	지방교부세	5,450,042	1,057,795	1,073,662	1,089,767	1,106,113	1,122,70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과 행정담당	
연 락 처	033-430-2212

<개정2021.7.1.>

홍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종·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841	467	12	140	35	33	15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5	460	12	99	35	33	154
	4급	소 계	4	3		1			
		서 기 관	2	2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1	1					
	4~5급	소 계							
		행정 · 기술4 · 행정5							
		기술4·보건간호의무5							
	5급	소 계	32	17	2	2	1	1	9
		행 정	7	7					
		의 무							
		행정 · 사복	2	2					
		행정 · 농업	2	2					
		행정 · 녹지	1	1					
		행정 · 환경	1	1					
		행정 · 시설	3	3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복·농업·녹지	2						2
		행정·사복·농업·시설	6					1	5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환경·녹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1			1			
일반직	6급	소 계	172	103	2	13	8	6	40
		행 정	26(3)	21	2				3(3)
		세 무	2	2					
		농 업	3	3					
		의료기술	1			1			
		간 호	1			1			
		보건진료	6			6			
		환 경	2	2					
일반직	6급	시 설	14	12			2		
		녹 지	1	1					
		행정 · 세무	5	5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복	10	9				1	
		행정 · 공업	3	3					
		행정 · 농업	20	5				1	14
		행정 · 녹지	6	6					
		행정 · 보건	1			1			
		행정 · 환경	2	1			1		
		행정 · 시설	15	14			1		
		농업 · 환경	1	1					
		공업 · 시설	1				1		
		농업 · 수의	2	2					
		보건 · 간호	2	1		1			
		시설 · 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5					1	4
		행정·세무·보건	1	1					
		행정·세무·시설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9					1	8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서·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농업	2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농업·환경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복·농업·환경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운 전	4	4					
		전기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1				1		
일반직	7급	소 계	203	132	3	28	10	9	21
		행 정	51	44	3		1	1	2
		세 무	6	6					
		전 산	3	3					
		사회복지	13	8				1	4
		공 업	2				2		
		농 업	7	7					
		녹 지	5	5					
		보 건	9	1		8			
		의료기술	3			3			
		간 호	5			5			
		보건진료	6			6			
		환 경	2	2					
		시 설	27	21			1	1	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 · 세무	6	5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 · 공업	2	1			1		
		행정 · 농업	14	1				3	10
		행정 · 보건	1			1			
		행정 · 환경	4	3			1		
		행정 · 시설	9	8			1		
		전산·방송통신	1	1					
		수의·해양수산	3	3					
		보건·식품위생	2	1		1			
		보건 · 간호	2			2			
		행정 · 사서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환경·시설·공업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운 전	7	5		2			
일반직	8급	소 계	234	134	3	43	6	9	39
		행 정	50	37	1				12
		세 무	8	8					
		전 산	4	4					
		사회복지	18	8				1	9
		공 업	7	6		1			
		농 업	3	2		1			
		녹 지	2	2					
		보 건	2	1		1			
		의료기술	7			7			
		간 호	22			22			

		보건진료	7			7			
		환 경	6	4			2		
		시 설	18	14			1		3
		방송통신	1	1					
		방재안전	2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 · 속기	1		1				
		행정 · 공업	1					1	
		행정 · 농업	13	3				3	7
		행정 · 녹지	4	4					
		행정 · 환경	6	4				2	
		행정 · 시설	15	14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 · 사서	2	2					
		전산 · 시설	1	1					
		농업 · 수의	1	1					
		농업·해양수산	1	1					
		보건 · 간호	4	1		3			
		농업·녹지·시설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3	1					2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1				1		
		운 전	13	5	1	1		1	5
일반직	9급	소 계	148	71	2	12	10	8	45
		행 정	36	16				2	18
		세 무	1	1					
		전 산	1	1					
		사회복지	17	2				4	11
		공 업							

		농 업	5	5					
		녹 지	5	5					
		보 건	5	1		4			
		환 경	4	4					
		시 설	9	7					2
		방송통신	1	1					
		의료기술	4			4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 · 사서	5	5					
		행정 · 공업	3	1			1		1
		행정 · 농업	2	1					1
		행정 · 환경	4	2					2
		행정 · 시설	4	3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 · 보건	1			1			
		시설·방재안전	1	1					
		공업 · 시설	2	1			1		
		공업 · 환경	1	1					
		행정·세무·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6				3		3
		기계운영	5		1	1		1	2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2	2					
		방 호							
		운 전	10	1	1	2	1	1	4
		시설관리	3	1			2		
전 문 경력관		계	2	1		1			
	나군	영 사	1	1					

		농기계 교관	1			1			
연구직	계		5	5					
	학예 연구	소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기록 연구	소 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녹지 연구	소 계	1	1					
		연구관							
		연구사	1	1					
지도직	계		40			40			
	합계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농촌 지도	소 계	40			40			
		지도관	3			3			
		지도사	37			37			

※ 비고: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이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

홍천군 공고 제2021-86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4. 26. ~ 4. 29.(3일)
3.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건복지 수요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행정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구 조직체계 및 사무기능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보건소 내「보건정책과」및「건강증진과」신설
4. 주요내용

   가. 보건소 하부조직 개편(과 신설)에 따른 직급 조정(제7조)

직위	현행	조정	비고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간호·의무사무관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보건정책과장	신설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건강증진과장	신설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나. 분장사무 조정 : 보건소 ⇒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안 제8조 별표5)

   ※ 보건소 분장사무(별표5):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규칙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을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6장 읍·면"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를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를 삽입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의2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5장 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를 삽입한다.

제15조 앞에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를 삽입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읍·면"을 삽입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소장의 직급) ① ----------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하부조직) ①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2절 농업기술센터	<삭 제>
<신 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9조 ~ 제11조의2 (생 략)	제10조 ~ 제12조의2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의2까지와 같음)
제5장 사업소	<삭 제>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삭 제>
<신 설>	제5장 사업소
<신 설>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12조・제13조 (생 략)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삭 제>
<신 설>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5조・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6장 읍・면	<삭 제>
<신 설>	제6장 읍・면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7조・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원의 관리)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보건소장 직급 상향조정 4급 1명 증원(4·5급 1명 감 → 4급 1명 증)
 ○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 증원(6급 1명 감 → 5급 1명 증)
 ○ 추가비용 산출액: 33,95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홍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보건소장 직급 상향 조정(4·5급→ 4급) 및 과설치에 따른 직급조정(6급→5급)이 기존 정원내에서 직급조정 반영되므로 추가비용 산출액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행정과장 한 인 용
연락처	033-430-221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과 행정담당	
연 락 처	033-430-2212

[별표 5]〈개정 2021. 7. 1.〉

보건소 분장사무(제8조 관련)

업무분장	분 장 사 무 내 역
보건정책과	1. 보건업무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 4.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 5. 방역사업에 관한 사항 6. 전염병의 예방관리 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0.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11.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감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 진료,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3. 구강 보건에 관한 사항 4. 모자 보건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8.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9.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증진, 정신건강, 방문보건, 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